

제 561 호

1976. 6. 2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 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 화 75-7834
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 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049 호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... 3

제 1050 호 :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◎ 규 칙

제 1595 호 :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에 관한처분
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..... 4

제 1596 호 :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점사시행규칙..... 7

◎ 고 시

제 144 호 : 가로및공원명칭제 (개) 정고시..... 8

제 148 호 :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..... 10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6년 6월 2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49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
조 례 중 개 정 조 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"별표 1"

의 무 직 공 무 원 조 정 수 당 지 급 구 분

구 분	2 급	3 급 갑 류	3 급 을 류
월 수 당 지 급 액	200,000 원	180,000 원	160,000 원

부 칙

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6년 6월 2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50 호

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
조 례 중 개 정 조 례

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 제 1 항 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강당사용료 : 1회 (3시간) 사용료는 3,000 원으로하되 1시간 초과시마다 1,000 원씩 가산한다.

(사용은 매일 10:00-20:00 이
내로서 공휴일은 제외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
조에 관한 처분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
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1976년 6월 25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95 호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
제 31 조에 관한 처분규정시행규칙중
개 정 규 칙
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
에 관한 처분규정 시행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에

관한 처분규정 시행규칙을 「서울
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중에
관한 처분요령 시행규칙」이라 한
다.

제 1 조제 2 조제 3 조 및 제 4 조중
「규정」을 각각 「요령」이라
하며 「제 1 조중 제 447 호」를
제 532 호로 한다.

제 3 조제 2 호중 신고의 은폐 다음
에 「신고의 지연」을 삽입한다.
제 5 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두
하여 진술 또는 변명하지 아니
하거나 서면으로 확실한 증거를
제출치 아니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
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당시
중전의 규정 (교통부훈령제 477 호
및제 484 호) 에 위반된 사항으로
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중전
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처
분 또는 집행한다.

93

별표 1 " 법 령 위 반 처 분 기 준				
위반사항	위 반 내 용	관계법령	처분내용	비 고
매 연	1. 링켈만스모 크자도 3도이상 2. 링켈만스모 크자도 4 도이상	도로운송차량법제43조 "	정비지시및 경고 운행정지 3일과 정비지시병행	1. 타기관에서 적발이첨및 신고된 차량은 가. 농도가 명확치 않은 것은 매연 3도이하 일산화탄소 6.9%이하로 간주하여 정비지시 (단 정비지시불이행시는 3일간 운행정지 처분함)
일산화탄 소	3. 측정메타 5.6-6.9% 4. 측정메타 7%이상	"	정비지시 운행정지 3일과 정비지시 병행	나. 공인기관의 정비증거가 확실한 것은 경고처분 다만 위반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속하여 3 회까지 위반한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4 회위반한 때에는 5일간 운행정지 (직영형태의 업체도 포함)
소정기일 내에사고 발생에 대한보고 를하지	5. 신고이행 사고발생시각 으로부터기산 3시간이내 (경상 중상)	자동차운수사업법 17조	불 문	

위반사항	위 반 내 용	관계법령	처분내용	비 고
아니하거나 신고의은폐신고의지연 또는허위 보고를 할때	6. 신고지연경 상이하 24시간 이내, 중상이 12시간이내 7. 신고음폐 경상이후 24시간이후 중상이상 12시간이내	자동차운 수사업법 제 17 조 "	운행정지 1일 운행정지 3일	
개인택시 면허를 득한자가 타인으로부터여급 운전케 하였을때	8. 1회위반시 9. 2회위반시 10. 3회위반시 11. 4회위반시 12. 5회위반시	자동차운 수사업법 제 31 조 "	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5일 운행정지 20일 면허취소	1년이내에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경우
사업일부 정지위반 행위를 할때	13. 자동차운수 사업법제 31 조등에 관한 처분 요령별표 1 각항	"	자동차운 수사업법 제 31조등 에 관한 처분요령 에 의한 정지일수	사업일부정지처분요령 사업 일부정지는 법령위반차량 1대당 1대의 기준으로 소속회사에서 지정하는 차량에 처분한다. 다만 지정하지 아니할때에 는 위반차량 다음 등록번

위반사항	위 반 내 용	관계법령	처분내용	비 고
				호차량에 처분하고 다음순 위번호가 없을 경우에 소 속초번등록차량에 처분한다.

"별표 2" 경 감 기 준

위 반 사 항	위반내용	관계법령	처분내용	비 고
직영형태로 확인 된업체로서 법령 위반차량중 운행 정지처분에 해당 될때	1.1 회 2.2 회 부터 (1년 이내)	처분요령 제 7 조	경 고 2 일운행 정지	특별단속기간중 적발분과 매연 4 도 일산화탄소 7 % 이상 및 교통사고차량은 제외함.

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적부검사시행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1976년 6월 25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596 호

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검사
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식품위생

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3
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식품
의 품목별 내용을 확인 시험하도
록 필요한 조건을 부함으로서 자
율적인 품질관리와 부정식품으로
인한 위해를 미연방지하여 시민보
건강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허가조건) 식품제조허가에는
"허가받은 식품은 매품목마다 최
초생산품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아

시판하여야 한다. *는 조건을
 부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시험기관) 서울특별시 위생
 연구소를 확인 시험기관으로 한다.

제 4 조 (시험기준) 시험기관은 생산
 제품이 법제 3 조 내지 제 10 조의
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 시험한다.

제 5 조 (확인시험) 제 2 조의 규정에
 의하여 허가받은 식품의 최초생산
 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당해식품의
 적량을 첨부 의뢰하게 한다.

제 6 조 (확인시험대상식품) 별표의
 업종으로 허가받은 제조업소에
 제조된 최초생산품에 한한다.

제 7 조 (확인시험 및 성적통보) 확
 인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은
 15일이내에 확인시험을 완료하고
 성적서 2 통을 작성하여 1 통은
 의뢰자에게, 1 통은 검체와 함께
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확인시험결과조치) 확인시험
 한 식품이 부적합 할때에는 시판
 을 금지하고 재시험을 받도록
 한다.

제 9 조 (수수료) 시험수수료는 서울
 특별시험위생연구소 제수수료 징수
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.

제 10 조 (검체의보존) 연구소장은
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은
 최소 3개월간 검체의 일부를 보존
 하여야 한다. 다만 연구소장이
 판정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
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
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규칙 시행당시 이미
 허가된 제조업소가 생산하고 있는
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

가 로 및 공 원 명 칭
 제 (개) 정 고 시

가로 및 공원명칭을 아래와 같이
 제정 또는 개정 하였기 고시한다.

1976. . . .
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다 음					
1. 가 로					
현 명 칭	구 간	폭 원	연 장	제 정 또는 개 정 명 칭	비 고
방사2호선	하월곡동 (월암교) ~ 장위동~석관동~중랑천 ~동2로~육사앞	3.5 m	3,700m	화랑로	신규제정
방사4호선	삼일고가마장동종점~ 장안명~군자교~천호대 교~천호동	30~50	9,400	천호대로	"
방사7호선	회현동~남산3호터널~ 이태원동~잠수교~반포동	18~35	9,460	반포대로	"
영동1로	제3한강교남단~역삼동 211	50	3,900	강남대로	개 정
영동2로	압구정동211·16~역삼 동55	30	4,500	남1로	"
영동3로	압구정동170~도곡동 145	40	4,300	남2로	"
영동4로	압구정동22·26~도곡동 116·123	25	4,100	남3로	"
영동5로	청담동249·250~대치동 158·247	35	3,100	남4로	"
영동6로	영동교남단~대치동78	70	2,900	영동대로	"
호 당 로	제3한강교남단~압구정 동~청담동	30	5,700	압구정로	"
	제3한강교인터채인지~ 영동1지구1공구 $\frac{6}{30}$ 부력	30	2,200	잠원1로	신규제정

현 명 칭	구 간	목 원	연 장	제 정 또는 개 정 명 칭	비 고
호 당 로	영동1지구1공구158· 94부력~반포아파트~ 동작로교차점	30m	3,550m	잠원2로	신규제정
	영동1지구1공구79부 력~영동1지구1공구 304부력	30	550	동작로 (현행동작 로연장)	현동작로 구간이 변경(연장)됨
	삼성교 ~ 성내교	50	4,500	잠실로	현잠실로(삼전동~석 촌동~풍납동)는 없는 도로임으로 명칭폐지

2. 공 원

현 명 칭	개 정 명 칭	비 고
의 주 로 공 원	서 소 문 공 원	중구의주로 2가 16번지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
문화재보호법제 54조의 2 및 서울
특별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제 6조 동
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
지방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
고시한다.

1976년 6월 일

서울특별시장

<지 정 목 록>

1. 종별 및 지정번호 : 서울특별시
지방유형문화재제 33 호
2. 문화재명 : 홍지문 및 탕춘대성
3. 소재지
홍지문 : 서울특별시종로구홍지동산2
탕춘대성 : 좌측익성 - 서대문구홍은
동산일원
우측익성 - 종로구홍제동
산일원